

군산시 공고 제2026-2300호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7일

군 산 시 장**군산시 투자유치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미래 첨단 산업으로의 도약 기반 마련 및 신·증설 기업에 대한 지원 규정을 완화하여 제조업분야뿐만아니라 정보서비스·발전·통신 등의 업종에 대한 투자 유치 촉진

2. 주요내용

지역특성화업종 우대 지원, 신증설 기업 보조금 지원 범위 확대, 지역경제활성화 성과급 지원

3. 의견제출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10월 27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기업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 우) 54078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기업지원과(전화 : 063-454-2733, FAX : 063-454-6014)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기업지원과 기업유치계

전화 063-454-2733,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참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연락이 가능한 휴대폰, 자택, 사무실 등)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0호를 다음과 신설한다.

30. "지역특성화업종"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특성화업종 중에서 고용창출 및 기업유치 파급효과 등 지역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하여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이 군산시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업종을 말한다.

제19조의3제1항중 "5억원"을 "10억원"으로 한다.

제19조의3제1항제2호 중 "제조업"을 "기업"으로 한다.

제19조의8을 다음과 신설한다.

제19조의8(지역특성화업종 기업 특별지원) 군산시 투자사업장의 주업종이 지역특성화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10억원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의2을 다음과 신설한다.

제33조의2(지역경제 활성화 성과급 지원) 시장은 관내에 투자하는 기업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큰 자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00만원의 범위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1.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 시 관내에 주소를 둔 업체를 우선적으로 이용한 경우
2. 지역인재를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그 고용을 유지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9조의3에 따른 지원은 투자행위전 협약이 체결된 기업에 대하여는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29.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29. (현행과 같음) 30. <u>“지역특성화업종”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특성화업종 중에서 고용창출 및 기업유치 파급효과 등 지역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하여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군산시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업종을 말한다.</u>
제19조의3(신·증설기업 지원) ① 시장은 기존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비용의 3%범위내 최고 5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생략) 2.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u>제조업</u> 3. (생략)	제19조의3(신·증설기업 지원) ① 시장은 기존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비용의 3%범위내 최고 <u>10억원</u> 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현행과 같음) 2.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u>기업</u> 3.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19조의8(지역특성화업종 기업 특별지원) <u><신 설></u>	제19조의8(지역특성화업종 기업 특별지원) <u>군산시 투자사업장의 주업종이 지역특성화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10억원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 지원할 수 있다.</u>
<u><신 설></u>	<u>제33조의2(지역경제 활성화 성과급 지원) 시장은 관내에 투자하는 기업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큰 자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00만원의 범위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u> <u>1.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 시 관내에 주소를 둔 업체를 우선적으로 이용한 경우</u> <u>2. 지역인재를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그 고용을 유지한 경우</u>